

## II. 정정보도청구사례

### 언론기관 자신이 비판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는 언론기관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판에 대한 수인범위는 그만큼 넓어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6. 22.자 판결 (2005가합8911)

####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영혜 부장판사)는 2006년 6월 22일 한국방송공사가 조선일보와 소속 논설주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조선일보가 2005년 6월 3일자 『KBS 정사장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제하의 사설에서 KBS 사장이 수신료를 3배 인상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KBS 사장이 월례 조회사에서 수신료를 물가에 연동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했을 뿐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기관이 국가권력이나 사회 제세력에 대해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론기관 고유의 가치관에 따른 다양한 시각을 보장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언론기관 자신이 비판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언론기관이 일반인에 대한 비판자이면서도 국민들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봉사하는 자임을 감안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넓은 범위에서 언론의 자유를 허용받고 있는 점, 언론기관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언론 자신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는 그만큼 넓어져야 한다”면서 “또한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는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부적절함이 있기는 하나 방송의 공영성과 공익성을 더 높이고 구조조정 등의 자구노력 없이 국민에게서 시청료를 더 걷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논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8911 정정보도청구등

원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신

피 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2. 강 ○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조선일보사 논설주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변론종결 : 2006. 5. 18.

판결선고 : 2006. 6. 22.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3.부터 2005.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는 후 처음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일단 ‘조선일보’의 A 제35면 좌측 중간부분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중재 목 부분은 명조체 30호 활자로, 내용은 명조체 10호 활자로 게재하라.

이 유 : 1.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공사' 라고 한다)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 라고 한다)는 일간신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며, 피고 강○○은 피고 조선일보의 논설주간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조선일보 2005. 6. 3. 자 A 제35면 게재 별지 2 기재 사실(이하 '이 사건 사실' 이라고 한다)의 작성과 편집을 총괄한 사람이다.

#### 나. 원고 공사의 사장 정연주의 월례 조회사

원고 공사의 사장인 정연주는 2005. 6. 1. 직원 조회에서 원고 공사의 경영 혁신 대책과 재원구조 혁신 방안 등을 밝혔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원 구조 혁신 방안 중 수신료 물가 연동 추진: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수신료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4년의 2,500원은 1981년 기준으로 848원에 불과하다. 만일 1981년의 수신료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됐을 경우 현재 수신료는 7,362원으로 2004년 수신료 수입은 1조 5천억원이 되며 이는 광고 재원 없이도 회사 경영이 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재원 구조가 광고 재원 위주로 왜곡된 근본적인 원인은 1981년 정해진 수신료 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신료에 물가를 연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다. 피고 조선일보의 이 사건 사실 게재

피고 조선일보는 2005. 6. 3. 이 사건 사실을 조선일보에 게재하였다

#### 2.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정사장은 그런 ‘세금’을 2,500원에서 7,300원으로 3배 올려 받겠다고 한다”는 부분(이하 ‘제1기사 부분’)에 관하여

정연주는 수신료를 물가에 연동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수신료는 세금이 아닌 특별부담금임에도, 수신료를 세금으로 규정하고 원고 공사가 현재 2,500원의 수신료를 7,300원으로 올리는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여 원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KBS의 이런 계획을 전해 들으며 우선 드는 의문은 왜 KBS만 ‘시청세’를 징수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의 KBS는 MBC나 SBS와 무엇이 달라서 자기들만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이하 ‘제2기사 부분’)에 관하여

수신료는 일반 국민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달리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운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세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텔레비전의 시청을 하는 대가로서 수신료라는 세금을 납부한다는 오해를 하도록 하고, 또한 원고 공사와 법인 성격이 전혀 다른 MBC, SBS와 비교해서 왜 원고 공사만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여 수신료의 성격을 세금으로 혼동하게 하고 원고 공사가 마치 법률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도록 하여, 원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사장은 혹시 자신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에 대한 사실보도와 특집제작을 통해 우리 사회에 반미, 좌파 이념을 확산하고 정권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KBS의 업적으로 믿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부분(이하 ‘제3기사 부분’)에 관하여

원고 공사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뿐 보도와 특집 제작을 통해 반미, 좌파 이념을 확산한 사실도 정권의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공사의 모든 사실 보도와 특집 제작프로그램에 대하여 반미와 좌파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매도함으로써 원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나. 판단

##### (1) 제1기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문과 같은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살피건대,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단순히 ‘원고 공사의 사장인 정연주가 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7,300원으로 3배 인상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원고 공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수신료를 ‘세금’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위 적시한 사실에 원고 공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부정적 의미를 더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다) 다만, 이 사건 사실 중 아래와 같은 내용과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기준으로 제1기사 부분을 살펴보면, 원고 공사는 국가기간방송사임에도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를 발생시켜 놓고도 세금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거두는 수신료를 2,500원에서 7,300원으로 3배나 더 많이 거두어 자신들의 적자를 메우면서 손해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제1기사 부분은 원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연주 사장은 올해 745억원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신료를 물가에 맞춰 인상하고 방송법 규정을 바꾸도록 해 중간광고와 간접광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KBS는 MBC나 SBS와 무엇이 달라서 자기들만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공익성이 월등히 앞서기 때문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더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정사장은 자구노력으로 제작비 절감과 사업 축소로 예산 800억원을 줄이겠다고면서도 임금삭감과 명예퇴직은 거론만 했을 뿐 구체적 그림을 내놓지 않았다”, “8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1조 3,000억원을 굴리는 방만한 조직을 어떻게 나누고 정리해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인지에는 언급도 없다”, “공정성과 공익성에서 BBC에 비교하기도 우스운 KBS의 처지에 정사장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라)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연주의 월례 조회에서의 수신료 물가 연동 추진에 관한 언급의 주된 취지가 비록 1981년부터 수신료가 2,5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금액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수신료에 물가를 연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음 1), 2)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공사가 수신료의 인상수준을 7,362원 정도로 바라고 있지 않느냐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1) 갑제1호증, 을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공사의 2004년 적자가 638억에 이르고, 정연주의 월례 조회 당시 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만일 1981년의 수신료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됐을 경우 현재 수신료는 7,362원으로 2004년 수신료 수입은 1조 5천억원이 되며 이는 광고 재원 없이도 회사 경영이 가능한 수준이다....”, “...지금과 같이 재원 구조가 광고 재원 위주로 왜곡된 근본적인 원인은 1981년 정해진 수신료 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며...”라고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을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연주의 이 사건 월례 조회사 이후 각 언론사들이 다음과 같이 각 보도하는 등 표현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모두 월 7,362원을 언급하면서 원고 공사가 그 정도 수준의 수신료 인상을 원하고 있는 취지로 보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국일보 : “정회장은 구체적인 인상 폭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1981년 이후 물가상승분이 반영됐을 경우 현재 수신료는 7,362원으로 2004년 기준 1조 5,000억원에 달해 광고 없이도 회사 경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여 상당 수준의 인상을 바라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중앙일보 : “정회장은 또 ‘81년 책정된 수신료 2,500원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현재 수신료는 7,362원이 된다’며 ‘수신료에 물가를 연동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CBS : “정사장은 지난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수신료가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었을 경우 현재 수신료는 7,362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 “이날 정사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신료 인상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정사장은 ‘1981년 당시 2,500원이었던 수신료는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실질가치가 848원’이라면서 ‘당시 가치를 그대로 구현하려면 월 7,362원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 한편, 언론기관이 국가권력이나 사회 제세력에 대해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론기관 고유의 가치관에 따른 다양한 시각을 보장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언론기관 자신이 비판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언론기관이 일반인에 대한 비판자이면서도 국민들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봉사하는 자임을 감안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넓은 범위에서 언론의 자유를 허용받고 있는 점, 언론기관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언론 자신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는 그만큼 넓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정사장은 그런 ‘세금’을 2,500원에서 7,300원으로 3배 올려 받겠다고 한다”는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원고 공사는 국가기간방송사업에도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를 발생시켜 놓고도 세금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거두는 수신료를 2,500원에서 7,300원으로 3배나 더 많이 거두어 자신들의 적자를 메우면서 손해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사를 게재한 행위가 손해 배상의 원인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기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에서 세금이 아닌 시청료를 세금인 시청세로 지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더구나 이 사건 사설에 있어 시청료를 ‘세금’ 또는 ‘시청세’로 규정하기 이전에 “국민들은 전기요금과 통합해 강제로 거두는 수신료를

시청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하여 수신료가 세금과 사실상 유사하나 본래의 의미의 세금과는 성격은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나) 다만 원고 공사의 주장과 같이 위 기사 부분이 원고 공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인 시청료를 국민들에게 징수하여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 또는 암시하고 있다면 이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실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보면, 제2기사 부분은 원고 공사가 국가기간방송사업에도 다른 방송사인 MBC나 SBS와 보도의 공정성, 공익성 등에 있어 차별화되지 않으면서도 유독 수신료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청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제3기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순한 의견의 개진만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의견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그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에 족하다.

또한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 제3기사 부분을 보건대,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에 대한 사실보도와 특집제작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보도와 특집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기사의 전후문맥,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르면, 이 부분 기사는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부적절함이 있기는 하나 방송의 공영성과 공익성을 더 높이고 구조조정 등의 자구노력 없이 국민에게서 시청료를 더 걷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논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실의 게재 당시 원고 공사의 사실보도 및 특집방송 프로그램의 시각이 이념적,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더구나 반미, 좌파 이념을 확산하고 정권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그 자체의 의미로도 주관적인 판단이 전제된 평가적인 개념으로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김 영 혜

판 사 임 효 미

판 사 김 필 용

<별지> 정정보도문, 기사내용 생략 - 편집자 주

□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3.자 판결 (2006가합71378)

###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2006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임종인 의원이 주식회사 와이티엔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와이티엔이 「뉴스Q 2부」 ‘돌발영상’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법사위에 배정된 것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방송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동료의원들과 사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을 원고 몰래 촬영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풍자와 독설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닌 한 널리 허용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면서 “이 사건 방송 및 동영상에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당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국회의원들의 법사위 등 비인기 상임위 기피와 그로 인해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에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 및 그에 따른 일부 의원들의 불만을 보도하고자 함이 그 주된 것으로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또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표현방법 등이 모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와 비밀누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는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그 행위, 인격에 대하여 공중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 인물이고, 이 사건 방송 및 동영상 장면은 원고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상임위 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으로서 그 내용 또한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되고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공적 영역이라 할 것이지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초상과 대화가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고 상당한 방법에 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6년 6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6서울조정253)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린 바 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71378 정정보도등

원 고 : 임 중 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34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재 형

피 고 : 1. 주식회사 와이티엔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1

대표이사 표 완 수

2.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1 젤존타워

대표이사 김 도 현

3. 임 ○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변론종결 : 2006. 9. 29.

판결선고 : 2006. 10. 13.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이 방송하는 뉴스Q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과 본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과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ytn.co.kr)의 초기화면에 별지2 정정보도문 제목을 7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연결되게 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열린우리당 소속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임기 중 전반기 2년 동안 국회 내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인 국방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2006. 6.경부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에 배정되어 활동하게 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은 종합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로서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위 두 회사를 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와 함께 www.ytn.co.kr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임○○은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 소속 기자로서 “돌발영상” 프로그램의 담당기자이다.

나. 원고는 2006. 6. 20. 개의된 제260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동안 자신의 의원석에 앉아 자신이 법사위에 배정된 것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이 장면을 당시 본회의장 2층 방청석에 있던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의 촬영기자가 촬영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은 국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정을 소개하는 장면들과 함께 이를 약 3분 45초 분량으로 편집하여 2006. 6. 21. 18:30경 「뉴스Q 2부」 프로그램에서 돌발영상 <불만 엿듣기>라는 제목으로 별지3과 같은 내용으로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같은 내용의 ‘돌발영상’을 방송하였으며, 피고 회사들은 2006. 6. 2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방송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tn.co.kr)에 돌발영상 <불만 엿듣기>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방송과 동일한 내용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게재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2006. 6. 12.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안경률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의원들의 상임위 신청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내용 및 그 중간에 “특히 ‘법조 출신’이 주로 가는 ‘법사위’는 앞으로 ‘변호사 겸직’ 불가! 의원 개인 수입 감소!”라는 자막이 나오는 부분(이하 ‘제1장면’이라 한다)

(2) 2006. 6. 20.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김한길 원내대표, 김근태 의장 등의 발언 장면(이하 ‘제2장면’이라 한다)

(3) 2006. 6. 20. 국회본회의장에서 원고가 자신의 의원석에 앉아 자신이 법사위에 배정된 것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에게 “정의용 의원님, 김한길 운영위원장 찍어주지 마세요.”(이때 화면 자막에는 한나라당의 “정의화 의원님“이라고 잘못 표시되었다)라고 말하는 등 주변의 동료의원들에게 자신을 법사위에 배정한 김한길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 전반기에 같은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장면, 주변의 동료의원들에게 다시 “나한테 법안에 대해서 얘기만 해봐. 죽여버릴라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이하 ‘제3장면’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법사위에 소속되기 전인 2005. 11. 23.경 변호사휴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4, 9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 및 동영상을 통해 ① 원고는 당시 이미 변호사 휴업신고를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마치 변호사 수입 감소 때문에 법사위 배정을 기피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묘사하고, ②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에게 한 얘기를 마치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에게 한 것처럼 자막을 내보내고, 같은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과 악수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보도하여, 평소 개혁적이고 반한나라당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원고가 마치 사적인 이해관계를 탐하고 한나라당과도 가깝게 지내는 이중적인 인품을 지닌 인물로 보이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방송 및 동영상은 원고가 국회의원으로로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거나 의정활동을 하는 내용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동료의원들과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을 원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이는 원고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가사 피고의 영상촬영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대화내용까지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은 별지1, 피고 회사들은 별지2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방송 및 동영상은 현직 국회의원으로로서 공인인 원고가 국회 본회의장이라는 공개 장소에서 상임위배정이라는 국회의 공적 사안에 관해 그 직무와 관련된 불만을 표출한 내용을 촬영하여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고, 이는 사회적·공공적 영역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

## 3. 판 단

### 가. 명예훼손 부분

살피건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 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그 전체적 취지가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공직자에 대한 풍자와 독설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닌 한 널리 허용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9호증, 을 제1,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가 금지되면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법사위에 있는 동안 변호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사실, 이 사건 방송이 보도될 무렵 각 언론사에서는 애초 비인기 상임위였던 법사위는 이러한 사정까지 겹쳐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사정, 이로 인해 각 당에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진통을 겪고 있고 법사위 등 비인기 상임위에 배정된 일부 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정을 보도했던 사실, 이 사건 방송 역시 한나라당 의원총회(제1장면),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제2장면), 국회본회의장에서의 원고의 불만 표시(제3장면)를 촬영하여 이를 짧게 편집한 다음 그대로 보도한 것이고, 화면에 나오는 자막은 대부분 등장인물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거나 이에 짤막한 풍자적인 보충설명을 덧붙이거나 등장인물의 행동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사실, 제3장면은 본회의장 2층에서 1층을 촬영·녹음한 것이어서 주변의 웅성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되어 있고 이 때문에 원고가 “정의용 의원님”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포함해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실,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방송 및 최초의 이 사건 동영상 보도 이후에는 자막에 나온 “정의화 의원님”부분을 “정의용 의원님”으로 수정하여 게시한 사실, 원고가 박근혜 의원에게 가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에서 화면에 “그동안 같은 위원회에 있던 박 대표에게 작별인사!”라는 자막을 덧붙여 인사를 나누게 된 경위를 설명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고 아울러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의 ‘돌발영상’ 프로그램은 그간의 일방적인 정제된 뉴스를 전달하는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돌발적으로 포착한 정치일선의 현장을 보여 주어 정치기사에 관한 풍자성과 현장성을 제고한 새로운 뉴스전달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 및 동영상에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당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국회의원들의 법사위 등 비인기 상임위 기피와 그로 인해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에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는 사정 및 그에 따른 일부 의원들의 불만을 보도하고자 함이 그 주된 것으로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또한, “정의용 의원”을 “정의화 의원”으로 잘못 처리한 자막이나 원고가 말하지 아니한 “...갈까? 한나라당?”이라고 처리한 자막이 있으나, 이 사건 방송 및 동영상의 보도내용, 보도경위 및 보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풍자적인 보충설명이거나 일부 평가적 요소의 전제된 사실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표현방법 등이 모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와 비밀녹음 부분

살피건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대화 등 그 인격적 가치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나, 한편 언론보도에 의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그 행위, 인격에 대하여 공중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 인물이고, 이 사건 방송 및 동영상 중 원고가 등장하는 제3장면은 원고가 국회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상임위 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으로서 그 내용 또한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되고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공적 영역이라 할 것이지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과 대화가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방송 및 동영상의 보도내용, 보도경위 및 보도방법 등에 비추어 이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고 상당한 방법에 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조 해 섭  
판 사 황 인 경  
판 사 이 영 남

## 〈별지 1~2〉 정정보도문 생략

## 〈별지 3〉 방송내용 생략



**전제되는 중요한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전체적으로 평가적 표현에 의해 구성된 논평  
또는 비평에 해당하여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8.자 판결 (2006가합75493)

###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2006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하에 있는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피고 조선일보가 2006년 4월 27일자 『위원회가 통치하는 나라』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설치되고,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대통령 측근들을 중심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추구하면서 주요 정책들을 자의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도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인데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그런데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직자 등이 정정보도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언론기관의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한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언론의 기본적 기능이

위축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평 또는 비평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에 관한 언론보도에 사실적 주장과 평가가 혼재할 경우, 당해 보도의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 및 보도의 본질적 핵심을 기초로 하여, 그 사실적 주장이 평가의 표현내용을 이루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평가를 위한 전제로서 구체적 사실을 나열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부분으로서 허위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정정보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 “이 사건 기사는 그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으로 보면,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은 헌법과 정부조직에 관한 일반법인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등 정규의 국가운영조직 외에 주로 대통령령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가 남설 난립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통치제도를 왜곡하고 권한과 책임의 귀속을 모호하게 한다는 의견표명 또는 비평에 해당하며, 전제되는 중요한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전체적으로 평가적 표현에 의해 구성된 논평 또는 비평에 해당하여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들은 2006년 5월 2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6서울조정203)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75493 정정보도

원 고 : 1. 정책기획위원회

서울 종로구 도림동 95-1

대표자 위원장 송 하 중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26

대표자 위원장 윤 성 식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서울 종로구 적선동 122-1

대표자 위원장 성 경 룡

4. 동북아시아위원회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대표자 위원장 이 수 훈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전 태 진

피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변론종결 : 2006. 11. 24.

판결선고 : 2006. 12. 8.

주 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피고가 발행하는 조선일보 A34면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별지2 기재 기사의 제목 활자크기로, 본문은 별지2 기재 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1회 게재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위원회들로서, (1) 원고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종합·관리 및 조정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등 국가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2) 원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3) 원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4) 원고 동북아시아위원회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구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각 설치되었다. 그 중 원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특별법과 대통령령에, 원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대통령령에, 원고 정책기획위원회와 원고 동북아시아위원회는 각 대통령령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나. 2004. 말경까지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모두 22개였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2004. 12. 14.부터 2005. 1. 29.까지 위 22개 위원회 중 중앙인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적 성격을 갖고 정기감사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감사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11개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 배포하는 언론회사로서 2006. 4. 27.자 조선일보 A34면 “아침논단”이라는 칼럼에서, 「위원회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제목과 “초법적 각

중 위원회가 법원·정부업무 위락퍼락 국민이 제도에 맡긴 권력 대통령 측근이 사유화한 꼴”이라는 부제목 아래,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설치 근거가 없는 각종 위원회들이 헌법과 국민생활 속으로 마구 침투하며 ‘자기들만의 사고방식’을 강요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위원회 통치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중간 생략) 대통령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다”라고 한 뒤 원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원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을 예로 들면서 “공식기구인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은 위원회들이 발표한 정책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기관으로 변질됐다”, “대통령 직속인 각종 위원회들은 감사원 정기 감사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무회의에서의 토론과 표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위원회라는 비헌법적 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7, 8,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모두 특별법 또는 정부조직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그 구성원도 교수, 기업인, 시민단체,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 등의 민간위원과 관계 부처 장관 등의 정부위원이 있고, 위원회에서의 정책 채택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설치되고,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대통령 측근들을 중심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추구하면서 주요 정책들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소관부처는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 나.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인데(위 법률 제2조 제13, 14, 15호, 제14조)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그런데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직자 등이 정정보도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언론기관의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한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언론의 기본적 기능이 위축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평 또는 비평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에 관한 언론보도에 사실적 주장과 평가가 혼재할 경우, 당해 보도의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 및 보도의 본질적 핵심을 기초로 하여, 그 사실적 주장이 평가의 표현내용을 이루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평가를 위한 전제로서 구체적 사실을 나열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부분으로서 허위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정정보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대상 중, (1) 이 사건 기사에서 언급된 원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원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특별법에 그 설치근거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 중에 적시한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설치근거가 없는 각종 위원회들”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전체 맥락에서 그것이 중요한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04. 12. 14.부터 2005. 1. 29.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감사원의 ‘정기’ 감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사 중 “대통령 직속인 각종 위원회들은 감사원 정기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3)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위원회 통치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권력의 제도화’라는 입헌주의 헌정의 기본 질서를 흔들면서 대통령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다.”라는 부분과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무회의에서의 토론과 표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위원회라는 비헌법적 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다”라는 부분에 일부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통치제도가 왜곡되어 있다는 평가의 표현내용을 이루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기사는 그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으로 보면,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은 헌법과 정부조직에 관한 일반법인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등 정규의 국가운영조직 외에 주로 대통령령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가 남설 난립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통치제도를 왜곡하고 권한과 책임의 귀속을 모호하게 한다는 의견표명 또는 비평에 해당하는 기사라고 할 것이다.(정부조직법 제4조는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속기관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전제되는 중요한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전체적으로 평가적 표현에 의해 구성된 논평 또는 비평에 해당하여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조 해 섭  
판 사 황 인 경  
판 사 이 영 남

〈별지 1~2〉 정정보도문, 기사내용 생략 - 편집자주

□

## **진실한 사실이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8.자 판결 (2006가합75462)

###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3월 28일 문화관광부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동아일보가 2006년 5월 19일자 1면 『이참에 한 건...황당한 태클』 제하의 기사에서 문화관광부가 월드컵 축구 선수들 격려보다는 장·차관의 홍보에 더 관심을 두고

월드컵을 정부부처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한 사실과 다름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그 전체적 취지가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면서 “원고의 소속 직원이 ‘장·차관이 대표팀 선수들을 만나게 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장·차관이 선수들을 격려하러 독일에 가는데, 선수단 숙소 주소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일반인의 통상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장·차관이 독일에 가서 대표팀 선수들을 방문하려고 하니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 주기 바란다’는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할 것이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쓰이기는 하였어도, 전체적 취지가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한축구협회에서 원고에게 제공한 기자단 명단은 주독대사관의 요청에 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만 제공된 것이 아니고, 장·차관의 독일 방문에서의 기자단 면담과도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할 것으로, 월드컵을 정부부처의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6년 5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6서울조정201)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75462 반론보도

원 고 : 문화관광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대표자 장관 김 명 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전 태 진

피 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변론종결 : 2007. 3. 7.

판결선고 : 2007. 3. 28.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1.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 1면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2단 상자기사로, 그 제목은 사진식자 24급 고딕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활자 크기로 하여 1회 게시하라.

2. 피고가 제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체육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고, 피고는 신문의 발행·판매, 도서 잡지의 출판 및 판매,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신문사로서 일간지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보도 내용 및 보도 경위

(1) 우리 나라 월드컵 축구대표팀은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참가하게 되어 2006. 5. 27.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2006. 6. 5.부터 독일 쾰른에 머물며 2006. 6. 13.부터 약 한 달간 경기를 치렀다.

(2) 피고 소속 양○○ 기자는 2006년 5월 초순 경 경기 파주시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NFC)에서 월드컵 축구 대표팀 훈련을 취재하던 중 당시 대표팀 미디어담당관으로 대표팀 일정을 관리하던 대한축구협회 홍보국 이○○ 부장이 하루 종일 정부 각부처의 전화에 시달리는 광경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이○○와 독일파견 기자단 간사인 국민일보 조○○ 기사를 취재한 후, [이참에 한 건...황당한 테클]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별지 기재 기사(다음부터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기사는 동아일보 2006

년 5월 19일자 1면에 보도되었다.

장관과 차관이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 중 독일 현지로 격려차 가는데 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문화관광부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고 당혹감을 느꼈다.

월드컵 대회가 시작되면 대표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불문율. 그러나 2006 독일 월드컵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부 부처의 등쌀에 축구협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문화부는 물론 국정홍보처, 국가정보원 등이 월드컵을 앞두고 자기 부처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축구협회에 각종 문의와 협조 공문을 쏟아내고 있는 것.

문화부는 특히 언제 어디로 가야 한국 기자단을 만날 수 있는지와 현재 취재진의 신상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축구협회에 요청해 대표팀 격려보다는 장차관 홍보에 더 관심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취재 기자단 명단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수들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격려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3) 한편, 2006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기간 중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을 초청하여 각종 행사를 하겠다는 기업인, 공무원, 정치인과 방송인 등의 요청이 매우 많아 대표팀 훈련에 차질이 생길 정도여서, 2006. 5. 22.자 서울신문에는 ‘월드컵 선수들 그만 놓아주라’는 제목 아래 ‘각종 홍보성 행사로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없으므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이나마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자’는 내용의 사설이 실리고, 2006. 6. 24.자 경향신문에는 ‘국회의원들이 독일 현지에 와서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불가능한 것을 많이 요구해 빈축을 샀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한축구협회에 장관 및 차관의 독일 방문시에 대표팀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대한축구협회에 한국기자단 신상명세서를 요청한 이유는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이 원고에게 독일 지자체의 한국 기자단 유치 제의에 대한 입장 및 기자단 현황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해와 이를 위해서일 뿐 장·차관의 홍보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대한축구협회에 장관과 차관이 독일 월드컵 기간 중 독일 현지에 가는데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언제 어디로 가야 한국기자단을 만날 수 있는지와 현지 취재진의 신상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월드컵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부부처의 등쌀에 축구협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재·보도한 이 사건 기사를 정정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을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나. 판단

(1)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의 요건'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 본문에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한 사실과 다름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그 전체적 취지가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2) 을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증인 김○○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기자단 간사인 조○○은 2006. 5. 3. 경 원고 소속 국제체육과의 김○○ 사무관으로부터 '독일 월드컵 때 원고의 장관과 차관께서 독일 현지를 방문하는데 선수단 격려를 겸해서 기자님들도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독일 월드컵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명단을 우리가 받아 볼 수 있겠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기자단 명단은 축구협회에서 파악하고 있으니 축구협회 이○○ 부장과 협의하면 명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장·차관의 독일 방문 때 격려 자리를 갖는 것은 독일 현지에 오시거든 경기일정이나 선수들의 스케줄을 감안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답한 사실, 이○○는 2006년 5월 초 원고 소속의 남자 직원으로부터 '장·차관이 선수단을 격려차 방문하러 가니, 쾰른의 선수단 숙소 주소 및 파견기자단 숙소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한체육협회 홍보국의 오○○ 대리인 하여금 쾰른의 선수단 및 파견기자단 숙소 주소를 보

내게 한 사실, 또 이○○는 원고 소속의 국제체육부 직원임을 지칭하는 사람들과 장·차관의 독일 현지 방문 및 기자단 명단 제공문제로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으며, 그 통화 중에는 '장·차관이 선수들을 언제 만나는 게 좋으냐'는 내용도 있었던 사실, 양○○ 기자는 이○○와 조○○ 기자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후 2006. 5. 17. 김○○ 사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취재한 결과 '장·차관이 독일 월드컵에 갈 계획이 있으나, 선수들 훈련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우선 '원고가 대한축구협회에 장·차관이 독일 월드컵 기간 중 독일 현지에 가는데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 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의 일부 증언, 갑 2호증의 2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갑 2호증의 2는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실무자들로부터 확인절차를 밟지도 않고 작성된 것으로 보임) 원고의 소속 직원이 '장·차관이 대표팀 선수들을 만나게 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장·차관이 선수들을 격려하러 독일에 가는데, 선수단 숙소 주소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일반인의 통상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장·차관이 독일에 가서 대표팀 선수들을 방문하려고 하니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 주기 바란다'는 의미로 충분히 받아 들여질 수 있다 할 것이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쓰이기는 하였어도, 전체적 취지가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보도라고 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언제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는지와 현지 취재진의 신상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월드컵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부부처의 등쌀에 축구협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도한 부분이 진실과 다른 보도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3호증의 기재, 갑 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Bonn) 분관이 2006. 5. 6.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 독일지방자치단체가 한국기자단을 유치하여 자기 지역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면서, 한국기자단의 규모 및 독일 지자체의 유치 제의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원고 소속 정○○ 사무관은 2006. 5. 12.경 이○○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기자단 명단제공을 요청한 사실, 대한축구협회는 원고에게 '대부분의 기자들이 경기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동하므로 특정도시에서 한국기자단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축구협회 경유 등록 기자 명단을 첨부한 공문을 보내, 정○○ 사무관은 2006. 5. 15. 이를 외교통상부에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3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 및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김○○ 사무관은 이○○, 조○○ 기자 등과의 통화 당시 기자명단 요청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나 주독일 대사관의 요청 또는 독일지자체에 관련된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이○○도 정○○ 또는 김○○ 사무관으로부터 기자명단 요청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등과 관련된 언급을 들은 사실이 없는 점, 이○○가 원고 측의 요청을 받고 대한축구협회 송○○ 부장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송부한 기자단 명단에는 기자의 이름, 소속 매체명 외에 인터넷 매체인지 여부, 숙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상세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 사무관이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의 요청에 의해 외교통상부에 보낸 기자단 명단(갑 3호증의 2)에는 매체명과 기자이름, 취재기자인지 사진기자인지 여부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조○○ 기자는 원고가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문을 받기 전인 2006. 5. 3. 김○○ 사무관으로부터 “독일월드컵 때 장관과 차관께서 독일 현지를 방문하는데 선수단 격려를 겸해서 기자님들도 뵈었으면 하고, 월드컵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명단을 받아 볼 수 있겠냐”는 요청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원고에게 제공한 기자단 명단은 주독대사관의 요청에 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만 제공된 것이 아니고, 장·차관의 독일 방문에서의 기자단 면담과도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월드컵을 정부부처의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이종훈

〈별 지〉 정정보도문, 기사생략 - 편집자 주

□

##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방송사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를 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자 판결 (2006가합12856)

###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연구소와 연구소 소속 비상임 운영위원들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심판신청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지난 2006년 3월 26일 20시 「KBS 스페셜」 프로그램 “〈이해관계, 일자리의 위기〉 제1편 :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 제하의 방송에서 “원고 연구소가 대표적인 외국계 투기 자본인 소버린에게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원고 장○○, 김□□ 등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 그룹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취득한 SK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그들이 운영위원으로 있는 원고 연구소가 SK 그룹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반대 측 당사자인 소버린에게 제공하였다”면서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공적 활동과 사적 이익의 충돌로서 비윤리적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자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해 원고들의 공정성과 도덕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는 그것이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이때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방송보도가 허위의 사실에 대한 것인지 차례로 살펴본다”고 전제한 후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부분, ‘원고 장○○, 김○○, 김□□가 영리 목적의 원고 연구소에 소속되어 소버린에게 컨설팅 해 주었다’는 부분,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상담을 해줬다’는 부분, ‘원고들이 SK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SK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소버린에게 팔았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정보도를 방송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6년 4월 2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6서울조정143)을 하였으며 조정 결과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12856 정정보도심판신청

원 고 : 1. ○○연구소

대표자 소장 김 △ △

2. 장 ○ ○

3. 김 ○ ○

4.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 안

담당변호사 이 상 훈

피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혁

변론종결 : 2007. 3. 22.

판결선고 : 2007. 4. 12.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스페셜” 프로그램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피고가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각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스페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을 자막으로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이를 낭독하도록

하라.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각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연구소(이하 '원고 연구소' 라고 한다)는 2001. 11. 21.경 설립된 민간연구소로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분석 등 연구활동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은 기업별 지배구조에 대한 여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원고 장○○, 김○○, 김□□는 모두 원고 연구소의 비상임 운영위원들이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실행위원들로서 그들이 주축이 되어 원고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2) 피고는 국내의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방송보도를 하였다.

##### 나. 이 사건 방송 보도

##### (1) 방송 일시와 해당 프로그램

피고는 2006. 3. 2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약 1시간 동안 "K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해관계, 일자리의 위기〉 제1편 :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라는 제목의 방송 보도를 하였다.

##### (2) 전체적인 구성 내용

이러한 방송보도에서 피고는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중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 설비투자를 기피하고 해외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내 생산설비도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을 "자본의 파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것이 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자본 파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바탕에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주주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국내 기업에 자리 잡은 주주 중심의 경영관행이 존재하고, 특히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성향의 외국인 자본 내지는 외국인 주주들이 이에 편승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과도한 주주이익 실현을 적극적으로 요구함과 아울러 국내 지배주주에 대한 경영권을 공격함으로써 인하여 국내 기업의 소중한 경영자원이 그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투자에 사용되지 못하고 취약한 경영권 방어 등에 낭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결론으로 국내 우량 대기업들이 주주 중심의 경영관행을 탈피하여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장기 모험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재계와 노동계가 경영권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상호 보장해 주는 대타협을 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3) 이 사건 방송보도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면서 주주자본주의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서 주도하여 이루어진 소액주주운동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 그 소액주주 운동가들, 특히 원고 장○○, 김○○, 김□□가 중심이 되어 원고 연구소를 설립하였다면서 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화면에 보여준 후 원고 연구소가 공익적인 시민단체가 아니라 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을 유료로 서비스하는데, 원고 연구소가 대표적인 외국계 투기 자본인 소버린에게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원고 장○○, 김□□ 등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 그룹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취득한 SK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그들이 운영위원으로 있는 원고 연구소가 SK 그룹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반대 측 당사자인 위 소버린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공적 활동과 사적 이익의 충돌로서 비윤리적이라는 취지로 매우 비판적으로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3 방송보도문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방송보도'라고 한다).

① “원고 연구소는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을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 “원고 연구소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특정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유료로 제공하기도 한다”(이때, 원고 연구소가 발간한 주식회사 에스케이에 대한 Proxy Information 보고서와 Company Report를 자료화면으로 방송하였다)

② (원고 김○○이 피고의 담당 PD의 질문에 “소버린에게도 정보를 팔았는데, 그게 어떻다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답변한 회견 모습에 이어서) “이 단체는 소버린에도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③ (이어서 2004. 1. 19.자 “SK그룹 소액주주 운동 참여연대 기자간담회”에서 원고 장○○, 김□□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소버린이 SK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SK 경영진을 비판하는 소액주주운동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상기시킨 다음) “똑같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영리 목적의 단체에 소속되어 분쟁의 한 당사자인 소버린을 컨설팅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소버린의 반대 측인 SK 경영진을 공격한 것이다”

④ (이어서 이에 대한 원고 연구소의 소장인 소외 김△△이 반론하는 회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정○○ 과학기술 정책연구원과의 회견에서 위 정○○이 “...원고 연구소가 만약에 소버린에게 정보를 유료로 서비스했고, 그 과정에서 (이때, 원고 장○○을 지칭하

는 발언 부분을 삭제 처리함) 소버린 측을 만나서 상담을 해줬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취득된 새로운 정보들을 다른 한편에서는 소버린에게 팔고 있고, 이런 것은 위선적인 활동이다”라고 말한 내용을 방송하였다.

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 불성립

원고들과 소외 김△△은 이 사건 방송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6. 4. 20.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2006. 4. 26.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7호증, 을 제1 내지 3, 9, 1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사실로 적시된 아래와 같은 부분들은 모두 진실이 아니고, 그러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은 민간 연구소나 교수 내지 시민운동가로서의 공정성과 도덕성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정정하는 내용의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 연구소는 그 수익사업의 하나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와 개별 기업들에 대한 지배구조 분석 및 그 평가정보를 CG INFO라는 보고서 형식으로 원고 연구소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바, 소버린도 이러한 서비스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원고 연구소가 다른 유료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소버린에게도 위와 같이 규격화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 연구소가 발간한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제공한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 원고 연구소가 마치 소버린으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의뢰를 받아 소버린에게 위와 같은 규격화된 서비스 이외에 다른 차별화된 보고서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방송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② 또한, 원고 연구소는 위와 같이 소버린으로부터 구체적인 별도의 자문의뢰를 받아 그

자문에 응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자료화면으로 보도된 2004. 1. 19.자 “SK그룹 소액주주 운동 참여연대 기자회견담회”에서 원고 장○○, 김□□가 발언한 내용은 그 당시 SK 주식회사의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소버린과 SK 측과의 중재에 실패한 참여연대가 위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취지였을 뿐 SK 경영진을 공격하는 취지가 아니었으므로, “똑같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영리 목적의 단체에 소속되어 분쟁의 한 당사자인 소버린을 컨설팅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소버린의 반대 측인 SK 경영진을 공격한 것이다”라는 방송보도도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③ 또한, 원고 장○○은 2004년 3월 SK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버린 측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원고 장○○은 소버린 측과 SK 경영진 사이의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이들 양쪽을 포함하여 SK의 채권단까지 모두 만났고, 그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소버린 측을 만나 SK 경영진과의 원만한 중재를 위해 노력했을 뿐이지 그 과정에서 소버린에게 SK 지배구조 등에 대한 개별적인 자문을 제공한 사실은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서 상담을 해줬다”라는 방송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고, 한편 이 부분 방송보도가 제3자인 소외 정○○과의 회견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지만 이 역시 피고가 이 사건 방송보도를 통해 직접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다름 아니며, 비록 원고 장○○을 지칭하는 부분이 삭제되고 방송되었으나, 그동안 SK와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의 진행경과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로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부분이 원고 장○○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에서 원고 장○○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④ 마지막으로, 원고 연구소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한 여러 정보서비스는 해당 기업의 공시자료나 정부 보유 자료 등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고 연구소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그 분석 내지는 평가 결과와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 연구소 또는 그 운영위원인 원고 장○○, 김○○, 김□□ 등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SK에 대하여 어떤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그 반대 측인 소버린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취득된 새로운 정보들을 다른 한편에서는 소버린에게 팔고 있다”라는 방송보도도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고, 이 부분도 제3자인 소외 정○○과의 회견을 보도한 것이지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피고가 이 사건 방송보도를 통해 직접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는 아래와 같이 모두 진실된 사실에 대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사실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논평의 일종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룬다.

① 원고 연구소가 그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는 한정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특정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석자료인 Company Report 등을 제공하는 한편, 유료 회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문의를 받아 그에 답변하는 이메일컨설팅이 패키지로 제공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이메일컨설팅이 포함된 정보 서비스를 소버린에게 제공한 것 자체가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고,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고 고객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용어는 관련 업계에서 사용하는 관용어의 일종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일치된 사전적 정의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제공한 정보 서비스와 이메일 컨설팅에 대한 논평으로서 사실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연구소는 소버린에 대하여 유료로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원고 장○○, 김○○, 김□□를 비롯한 원고 연구소의 운영위원 내지 소속원들은 대부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를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SK 경영진을 공격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 역시 진실된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자료화면으로 보도된 기자간담회(이것도 원고들이 SK에 대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당일 기자간담회에서 SK 경영진을 공격한 사실을 보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명백함)에서 원고들은 SK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불참의사와 중립선언을 밝히는 한편, SK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므로, 이 점을 지적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상담을 해줬다”라는 방송보도는 무엇보다 원고 장○○을 지칭하는 부분이 익명처리된 정도를 넘어 아예 삭제되어 방송되었으므로 원고 장○○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떤 대가를 받고 구체적인 자문에 응한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컨설팅이라는 용어 대신 단순히 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 역시 진실된 보도이다.

④ 또한, 원고 연구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참여연대에 소속되어 SK에 대하여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그 구성원이 중복되고, 참여연대 소속원들이 중심이 되어 원고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원고 연구소가 발간한 여러 보고서 등이 위 참여연대의 시민운동에 활용되는 한편, SK에 대한 비밀정보(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SK에 대한 비밀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소버린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가 없음)가 아니더라도 원고들은 SK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분석, 가공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 등의 형태로 소버린에게 유료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도 진실된 사실에 대한 보도이다.

#### 나. 판단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는 그것이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이때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요하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방송보도가 허위의 사실에 대한 것인지 차례로 살펴본다.

①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도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부분

㉞ 이 부분에 관하여는 무엇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사용된 “맞춤형 컨설팅”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방송보도가 허위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위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단어 내지 어휘가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어떠한 언론보도에서 사용된 단어 내지 어휘는 그 자체의 뜻만으로 그 의미나 취지를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적인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방송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컨설팅이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보유한 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의뢰인에게 그 의뢰받은 사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수식어로 “맞춤형”이 덧붙여졌다면 이는 의뢰받은 내용이나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지식이나 정보의 내용이 의뢰인이 처한

개별 상황이나 여건 내지는 구체적이고 특정된 사안에 더욱 적합하도록 통상의 컨설팅과 비교하여 그 제공되는 지식이나 정보의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어서 다른 의뢰인에게 제공되는 그것과 차별화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② 구체적으로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어휘가 사용되기 이전에 피고는 “원고 연구소는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을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이어서 “원고 연구소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특정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유료로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한 후 소비권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이 사건 방송보도가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사용된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어휘는 전자, 즉 원고 연구소가 일반적으로 고객들에게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을 유료로 제공하는 정도의 서비스와는 달리, 원고 연구소가 특정한 고객, 즉 소비권으로부터 특정 개별기업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별도의 자문을 받아 다른 일반적인 고객들과 차별하여 특정 고객(소비권)에게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③ 이 사건 방송보도가 전체적으로 원고 연구소 내지는 그 운영위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운동을 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SK 경영진의 반대 당사자인 소비권에게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비윤리적인 자문행위를 하였다고 비판하는 취지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피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 부분에 이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외 정○○의 회견내용, 즉 “원고 연구소가 SK에 대한 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들을 소비권에게 팔았다”라는 보도로 이 사건 방송보도를 마무리하였으며, ④ 이에 따라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접하는 일반적인 시청자로서도 이 사건 방송보도를 통하여 원고 연구소 내지 그 운영위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대외적으로는 국내 대표적인 공익적인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SK 경영진을 비판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영리단체인 원고 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기적인 외국 자본인 소비권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의뢰를 받아 그에게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유료로 제공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단어 내지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그것이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사용된 전·후의 연결상태와 그 맥락, 이 사건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와 흐름, 그리고 그것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과 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어휘는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원고 연구소가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을 고객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른 일반적인 고객들과는 달

리 특정 고객인 소버린으로부터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자문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행위를 하였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로 보이는 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㉔ 위와 같은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어휘의 구체적인 의미를 전제로 하여, 과연 이 사건 방송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위와 같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본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21,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4, 35호증, 을 제4,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㉕ 원고 연구소의 정관(갑 제17호증)에는 원고 연구소가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정책, 실무관행, 정보의 조사, 연구, 평가 및 관련 자료의 발간 및 발표 등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이러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출판, 컨설팅 등의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㉖ 실제로 원고 연구소는 아래에서 상세히 보는 바와 같은 Info Service와 함께 그와 별도로 상담(Consulting)업무를 제공하는 사실, ㉗ 그 중 위 Info Service는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원고 연구소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에게 Company Report(국내 53개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Issue Report(국내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쟁점에 대해 시의적절한 분석을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개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요 쟁점과 성향도 포함됨), Proxy Information(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의견권행사방향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주주의안분석보고서), 한국 기업지배구조 핸드북(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체계, 주주의 권리, 의견권행사방법과 그 절차 등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참고서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임)을 제공하는 바, 이러한 서비스는 다시 위 네 가지를 모두 제공함과 아울러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받아 그로부터 36시간 내에 원고 연구소가 답변을 하는“이메일 컨설팅”(연간 10시간이 기본)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회비 : 연간 1,200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그밖에 매주 1, 2회(연간 60건 이상) 정도 발간되는 Issue Report만을 즉시 이메일로 송부해 주는 서비스 상품(회비: 연간 700만 원)과 위 세 가지 유형의 보고서를 건당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상품 등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상품이 마련되어 있는 사실, ㉘ 그런데 앞에서 본 Info Service 상품으로 그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위 세 가지 유형의 보고서들은 모두 유료 회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연구소가 직접 대상이나 주제를 선정하여 발간한 후 이를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송부해 주는 사실, ㉙ 소버린 역시

이러한 원고 연구소의 Info Service에 연간 1,200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한 유료 회원으로서 이러한 서비스 상품을 통하여 원고 연구소로부터 위 원고가 발간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Company Report, Issue Report, Proxy Information 등을 제공받은 사실, ㉠ 그리고 원고 연구소는 2004년 3월 SK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2004. 2. 25.경 소버린의 한국 대표인 James N. Fitter로부터, 그 무렵 소버린이 SK 사외이사로 추천한 인물들에 대해 그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 발간한 원고 연구소의 Issue Report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들이 SK의 사외이사로 추천한 인물들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알리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그러나 원고 연구소는 2004. 3. 3. SK의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을 분석하여 의결권행사방향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발간한 Proxy Information에서 소버린 측이 사외이사로 추천한 3명 중 2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종전 그대로 유지하였다), ㉡ 또한 그 후 원고 연구소는 2005. 3. 4.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직 유지의 의미”라는 제목의 Issue Report를 발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05. 3. 4.경 소버린의 한국 내 대리인인 소외 김○○으로부터 위 보고서 중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어 그 정정을 구하고 2005년 3월 SK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원고 연구소가 소외 최태원이 SK의 이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후, 이에 대하여 2005. 3. 7.경 위 김○○에게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 관련한 보고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200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최태원이 이사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 ㉢ 한편, 원고 연구소는 이러한 Info Service와 별도로 특정 고객으로부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문 내지는 용역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는 상담(Consulting)업무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위 Info Service의 연간 회비와는 달리 투입인원과 시간을 기초로 산정하는 보수를 별도로 지급받는 사실, ㉣ 이 사건 방송보도를 위한 취재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연구소의 소장인 김△△과의 회견에서 위 김△△ 역시 “원고 연구소가 위 Info Service와는 별도로 컨설팅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의뢰인으로부터 특정 회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한다”, “위 Info Service는 규격화되고 특별히 맞춤형이 아니므로 기업 고객들도 허용하지만 컨설팅 부분에서는 기업고객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소버린에게 유료로 Info Service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해 “외국자본이나 국내자본이나 Info Service는 다 열려있다”라는 취지로 반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연구소는 자신들이 그 수익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기업지배

구조에 대한 Info Service와 관련하여, 그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에게 그와 같은 서비스 상품에 같은 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한 다른 유료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주제나 대상을 선정하여 발간한 기업지배구조, 특히 SK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제공하였고, 소비자가 가입한 위 Info Service에는 위 보고서 제공 이외에도 연간 10시간의 이메일 컨설팅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맞춤형 컨설팅”이란 원고 연구소가 소비자에게서부터 일반적인 유료 회원들과는 달리 별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문 내지 용역수행을 의뢰받아 별도의 대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의미인바(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연구소가 Info Service와 별도로 제공하는 상담업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자문업무 내지는 용역을 원고 연구소가 소비자에게서부터 의뢰받아 유료로 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Info Service에 관하여 세 가지 종류의 상품이 마련되어 있어 고객이 어떠한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상품 분류는 위와 같은 여러 종류의 보고서를 모두 제공받느냐, 아니면 그 일부 또는 보고서 1건씩을 별도로 구매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정도의 상품분류에서 기인한 차이만으로는 원고 연구소가 고객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한편 위와 같이 원고 연구소가 소비자 측과 2회에 걸쳐 이메일을 교환한 사실이 있으나 거기에는 소비자가 원고 연구소에 대하여 별도의 자문을 의뢰하거나 그에 대하여 원고 연구소가 별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 연구소가 그 무렵 발간한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홍보하는 취지가 전부이므로, 이러한 정도의 이메일 교환을 두고 원고 연구소가 소비자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Info Service와 함께 제공되는 이메일 컨설팅이라는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었으므로 원고 연구소가 소비자에게 대하여 1:1 맞춤형 컨설팅을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Info Service와 이메일 컨설팅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된 이상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 내지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건대, 소비자가 원고 연구소의 Info Service 중 기본형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소비자가 원고 연구소에 대하여 연간 10시간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원고 연구소가 답변하는 이메일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분명한 사실이나, 이러한 이메일 컨설팅은 이미 원고 연구소가 발간하여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한 여러 가지 보고서들과 관련하여 그에 대하여 다시 유료 회원들이 원고 연구소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해 원고 연구소가 36시간 이내에 답변을 완료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서비스인 Info Service에 부수한 보조적인 사후 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메일 컨설팅 서비스를 소버린이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자문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앞에서 자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어휘가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사용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단순한 평가적 요소라고는 볼 수 없으며, 설령 이 부분 방송보도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다소 평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 대하여 그로부터 구체적인 의뢰를 받아 SK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문행위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방송보도는 허위의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똑같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영리 목적의 단체에 소속되어 분쟁의 한 당사자인 소버린을 컨설팅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소버린의 반대 측인 SK 경영진을 공격한 것이다”는 부분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방송보도의 전후 맥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서 사용된 “컨설팅”이라는 어휘는 그 이전에 사용된 “맞춤형 컨설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표현임이 분명하므로, 앞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으로부터 별도로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그에 따른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방송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이상, “원고 장○○, 김○○, 김□□가 영리단체인 원고 연구소에 소속되어 소버린을 컨설팅 해 주었다”라는 내용의 이 부분 방송보도 역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부분 방송 보도 중 “원고들이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SK 경영진을 공격하였다”라는 부분도 허위의 사실에 대한 보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장○○, 김○○, 김□□가 시민단체

인 참여연대에 소속되어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SK 경영진에 대하여 퇴임 내지는 해임 등을 요구하거나 그를 위한 정관계정을 요구하는 등 SK 경영진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부분 방송보도의 자료화면으로 사용된 원고 장○○, 김□□의 기자회견 당시 이들이 SK의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중립을 선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방송보도가 허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서 상담을 해줬다”는 부분

우선 원고 장○○이 이 부분 방송보도에서 피해자로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피고가 소외 정○○과의 회견을 방송하면서 원고 장○○을 지칭하는 위 정○○의 발언부분을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1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장○○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주요 위원으로서 SK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고, 특히 SK의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SK 측과 소버린 측과의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위 당사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를 대표하여 직접 소버린 측을 방문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언론에서 비교적 자세히 보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장○○이 해외에서 소버린을 접촉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등 원고 장○○과 소버린과의 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접한 일반적인 시청자가 통상의 주의만 기울이더라도 이 부분 방송보도에서 소버린을 만나 상담을 한 것으로 지목된 주체가 원고 장○○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추인되므로, 원고 장○○은 이 부분 방송보도에서 피해자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로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서 “상담”을 해 주었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여기에서도 위 “상담”이라는 표현이 과연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가 문제인바, 이 부분 방송보도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방송보도의 마지막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방송보도는 계속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연구소 내지는 원고 장○○, 김○○, 김□□가 공익적인 시민운동을 명분삼아 SK 경영진을 공격하면서도 그 이면에서 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소버린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에게 SK 지배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상담”을 해주었다라는 표현 역시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에 응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기에서 사용된 “상담”은 그 이전에 사용된 “컨설팅” 내지는 “맞춤형 컨설팅”과 구분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서로 의논한다는 취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흐름과 취지,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그로부터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장○○은 2004년 3월 SK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대립하고 있던 SK 경영진과 소버린의 원만한 중재를 위하여 그 의견이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하여 소버린 측을 면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부분 방송 보도 역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한편, 이 부분 방송 보도가 비록 제3자인 정○○이 발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방송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나 거기에서 이 부분 회견내용이 갖는 맥락과 의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정○○과의 회견을 보도한 것은 피고가 이를 통하여 자신이 직접 그러한 사실적 주장을 보도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시민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취득된 새로운 정보들을 다른 한편에서는 소버린에게 팔았다”

살피건대, 원고 연구소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원고 장○○, 김○○, 김□□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을 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그러한 소액주주운동을 함과 아울러 영리 단체인 원고 연구소의 운영위원으로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Info Service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위와 같은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소버린에게 유료로 팔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방송 보도는 피고의 추측에 기초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방송 보도 중에서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부분, “원고 장○○, 김○○, 김□□가 영리 목적의 원고 연구소에 소속되어 소버린에게 컨설팅해 주었다”는 부분,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상담을 해줬다”는 부분, “원고들이 SK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SK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소버린에게 팔았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정보도를 방송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상담을 해줬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에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청구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를 명하지 않기로 한다).

(3)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내용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보도가 이루어진 시간대 및 해당 프로그램, 그 표현방법과 내용,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스페셜” 프로그램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 3.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판결을 송달받고도 위에서 정한 기간 안에 위와 같은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각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경 민

판사 이 창 경

판사 김 은 정

## 〈별지 1〉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006년 3월 26일 〈이해관계, 일자리의 위기〉 제1편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의 제목으로, 장○○, 김○○, 김□□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연구소가 외국자본인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

민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를 다시 소비린에게 팔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연구소는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의 정보를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소비린에게도 유료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이상으로 소비린에 대하여 특별히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은 없으며, 또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를 소비린에게 판매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